

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	
번 호	2148

제출일자 : 2022. 11. 15

제 출 자 : 달성군



1. 제안이유

-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와 더불어 실질적 보상을 실시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예우 및 지원대상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추가함(안 제4조)
-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추가함(안 제11조 제1항)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3조 및 제5조(※ 붙임)

나. 예산조치 : 가용재원 활용 및 2023년 본예산 반영 예정

다. 기타

(1)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
(2) 입법예고

가. 예고기간 : 2022. 8. 10. ~ 8. 30.(21일간)

나. 예고결과 : 2022. 8. 29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접수(1건)

- 의견내용 : 내용 명확화 및 수당 지급 시기 명시

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
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(7) 비용추계서 : 따로 붙임

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그 단체로 한다.”를 “그 단체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. 단,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의 경우 자신의 배우자가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제11조 제1항 중 “국가보훈대상자에게”를 “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예우 및 지원대상, 보훈예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) 제4조 및 제11조 제1항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도래하는 해당분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예우 및 지원대상)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한다.	제4조(예우 및 지원대상) ----- ----- -----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. 단,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 자의 경우 배우자가 참전유공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 출하여야 한다.
제11조(보훈예우수당 지급)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(이하 “수당”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 단, 「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및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」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.	제11조(보훈예우수당 지급) ① ----- -----와 그 단체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□ 국가보훈 기본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희생·공헌자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- 가.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
 - 나.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
 - 다.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
 - 라.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
2. “국가보훈대상자”란 희생·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.
3. “국가보훈관계 법령”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.

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,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·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(財源)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1. 사업개요

- 기 간 : 2022년 ~ 계속
- 주요내용 :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을 위한 비용

2. 비용발생 요인

-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보훈예우수당 지급

3. 관련조문

-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3조 및 제5조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 :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 사업비

나. 추계 결과 : 5년간 775,600천 원

-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행에 따른 사업 비용은 5차년도까지 총 775,600천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

다. 재원조달방안 : 자체예산

5. 연도별 비용추계표 : 별지 붙임**6. 작성자 :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장 이재천**

[별 지]

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2)	2차년도 (2023)	3차년도 (2024)	4차년도 (2025)	5차년도 (2026)	계
세 입		19,600	126,000	168,000	210,000	252,000	775,600
지 방 세		19,600	126,000	168,000	210,000	252,000	775,600
의존재원							
세 출		19,600	126,000	168,000	210,000	252,000	775,600
보훈예우수당		19,600	126,000	168,000	210,000	252,000	775,600
재원 조달		19,600	126,000	168,000	210,000	252,000	775,600
의존 재원	소 계						
	보조금						
	지방교부세						
자체 수입	소 계	19,600	126,000	168,000	210,000	252,000	775,600
	지방세	19,600	126,000	168,000	210,000	252,000	775,600
	세외수입						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특별회계							
군 비		19,600	126,000	168,000	210,000	252,000	775,600
기 타 (차입금, 민자, 예비비 등)							